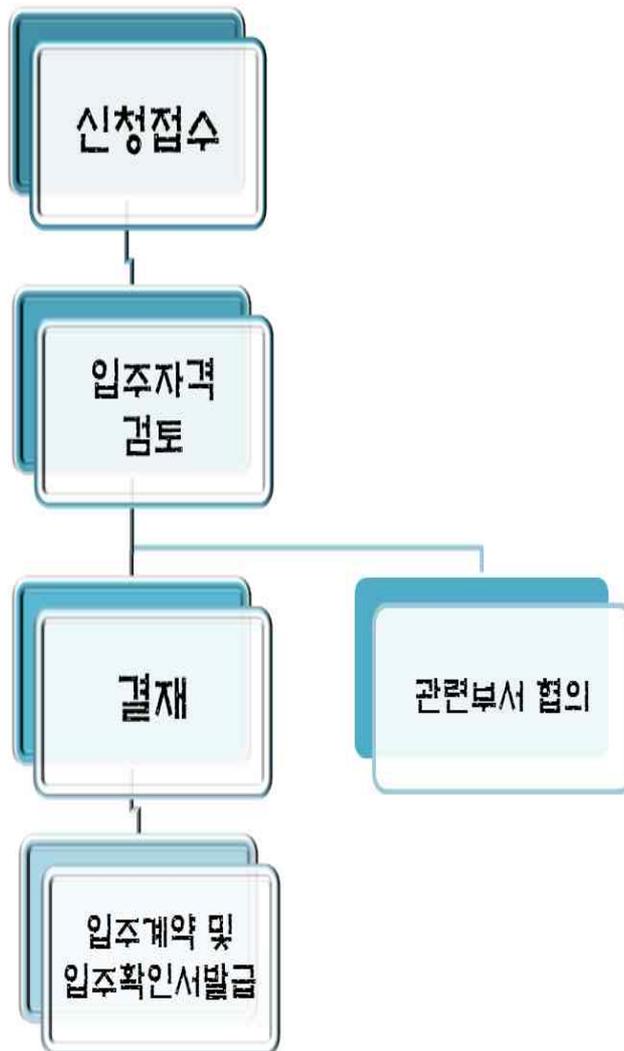


□ 입주계약(변경)

- 대상 :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
- 관련법령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
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22조
- 구비서류
 - 산업단지 입주(계약, 계약변경)신청(확인)서 1부(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)
 - 사업계획서 1부(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)
 - 계약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
- 절차



□ 임대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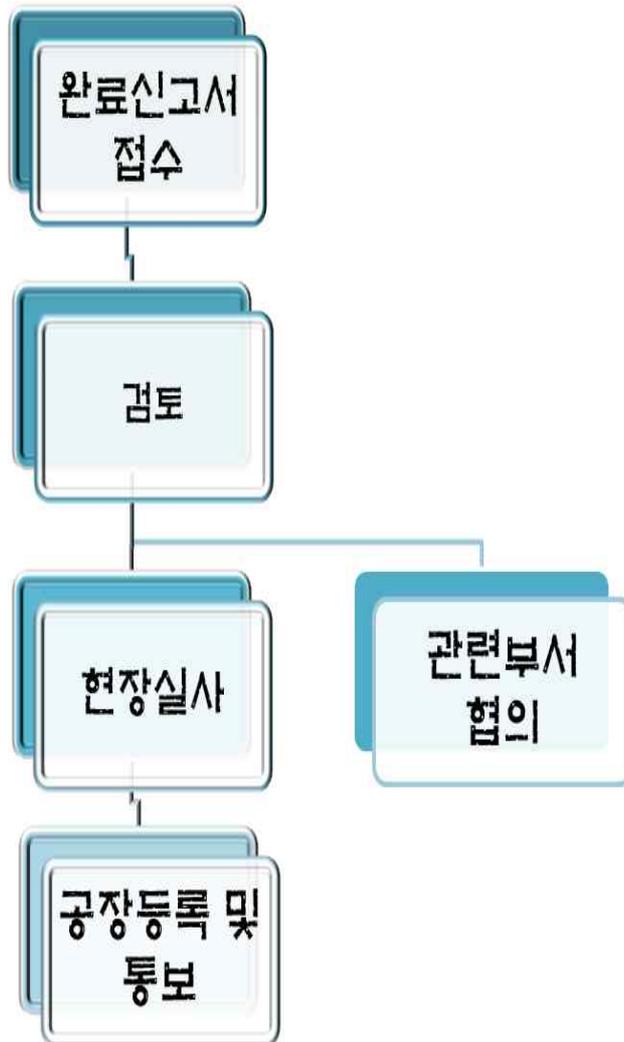
- 대상 :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
- 관련법령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
- 구비서류
 - 임대신고서 (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)
 - 전체 임대의 경우 : 임대사업계획서
 - 임대계약서 사본
 -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
- 절차



□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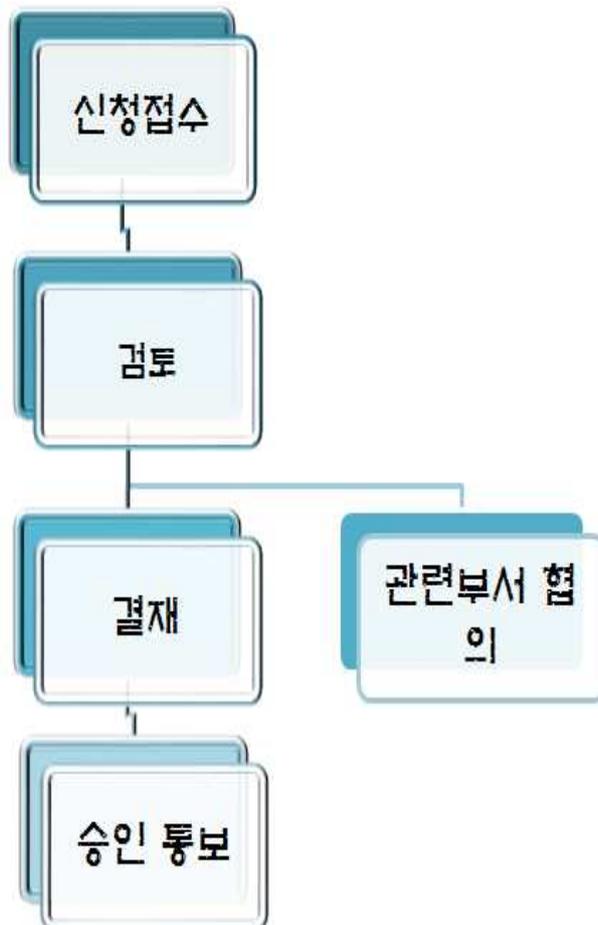
- 시기 :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얻고 기계·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
(2개월 이내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)
- 관련법령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제16조
- 담당부서 : 김해시청 허가과 공장설립팀(☎055-330-3691)
- 구비서류 :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)

- 절차



□ 공장설립 등의 승인(개별입지 공장)

- 시기 : 공장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
- 대상 :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이상인 신설·증설·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변경 (업종추가 포함)을 하고자 하는 자
- 관련법령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담당부서 : 김해시청 허가과 공장설립팀(☎055-330-3691)
- 구비서류
 - 공장[신설, 증설, 이전, 업종변경, 제조시설설치(승인, 변경승인)](신청)서 (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 - 공장설립사업계획서
 - 의제처리되는 인.허가 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
 - 토지 및 건축물(기존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)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
- 절차



□ 처분신고

- 대상 :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 하려고 하는 자
- 관련법령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
- 구비서류
 - 처분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)
 -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
 -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
- 절차



□ 처분신청(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)

- 대상 :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고 하는 자
- 관련법령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
- 구비서류 : 처분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)

-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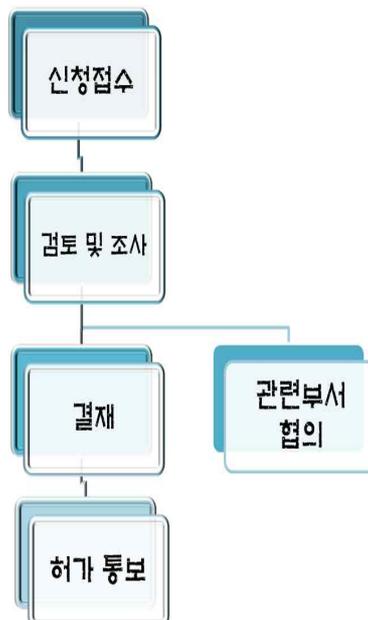


□ 개발행위허가(농지)

- 대상 :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 등
- 관련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
「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」 산업(농공)단지 지구단위계획
- 담당부서 : 김해시청 허가과 농지허가팀(☎055-330-3711)
- 구비서류 :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부 (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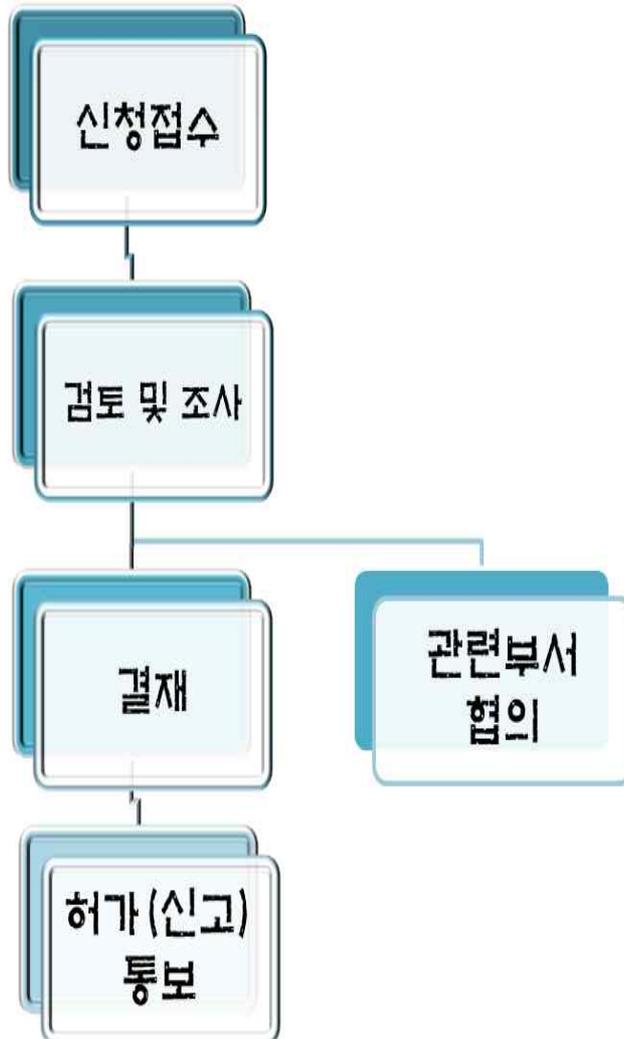
□ 개발행위허가(산지)

- 대상 :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 등
- 관련법령 :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
「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」 산업(농공)단지 지구단위계획
- 담당부서 : 김해시청 허가과 산지허가팀(☎055-330-3712)
- 구비서류
 -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부 (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 -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(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)
- 절차



□ 건축허가(신고)

- 대상 : 건축물 건축, 증축, 대수선 등
 - 관련법령 :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
 - 담당부서 : 김해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(☎055-330-3701)
 - 구비서류 : 건축허가 신청서 1부 (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)
- 절차



□ 건축물사용승인

- 대상 :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후 사용하려는 건축물
- 관련법령 : 「건축법」 제22조
- 담당부서 : 김해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(☎055-330-3701)
- 구비서류
 - 사용승인 신청서 1부(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)
 - 감리완료 보고서 1부
 - 공사완료 보고서 1부
- 절차

